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우크라이나(Ukraine)
2. 수도 : 키예프(Kiev, 290만명)
3. 인구・면적 : 4,420만명(2016. 7.), 603,700㎢(한반도의 약 2.7배)
4. 공용어 : 우크라이나어(러시아어도 널리 사용)
5. 1인당 GDP : 1,854불(2016년)
6. 독립일 : 1991. 8. 24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혼합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Ukraine

2. 연혁

○ 1996. 6. 28. 헌법 제정 -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

○ 1996. 10. 16. 헌법재판소법 제정

○ 1996. 10. 18.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및 활동 개시

○ 1997. 5. 13. 헌법재판소 첫 결정 선고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Chairman)과 부소장(Deputy Chairman) 2인을 포함한 18인의 재판관(Justice)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은 대통령, 국회, 법관회의에서 각 6인씩 임명

○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, 정년은 65세

- 재판관은 임명 후 대통령, 수상 및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

국회에서 선서함으로써 임기 개시

○ 헌법재판소장 및 두 명의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(3년 단임)

○ 재판관 자격 :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법조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,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20년 이상 거주하고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할 수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

4. 권한

① 의회가 제정한 법률 및 규칙, 대통령령, 내각령 및 크리미아(Crimea) 자치공화국 의회 규칙의 위헌여부심판

②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의 공식적 해석

③ 유효한 국제조약 및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국제조약의 위헌여부심판

④ 대통령 탄핵심판

5. 심리 및 결정

○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헌법청원(constitutional petition)과 헌법소원(constitutional appeal)으로 구분

○ 헌법청원은 대통령, 국회, 45인 이상의 국회의원, 대법원, 국회의 인권대표, 내각,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구

○ 헌법소원은 우크라이나 국민, 외국인, 무국적자 및 법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의 공식적 해석(권한 ②)에 관하여서만 청구

○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(panel)가 소송요건을 심사하며, 이를 위해 1인의 재판관이 예비 심사를 담당하고 지정재판부

과반수로 각하 결정

- 각하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, 청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및 헌법재판소가 청구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임

○ 지정재판부가 각하한 사건은 재판관회의(Session)에서 재심사하고, 각하하지 않은 사건은 재판소장이 전원재판부(Plenary Session)에 심리 회부

○ 재판관회의는 11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과 출석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건심사에 관하여 종국결정

○ 전원재판부는 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에 관하여 본안심사를 하고, 12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과 출석재판관 중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령의 합헌성 심사(권한①)에 대하여는 판결(decision), 기타 사항(권한②-④)에 대하여는 결정(conclusion)을 내림

○ 헌법청원에 대한 심리는 3개월, 헌법소원의 심리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

○ 판결과 결정은 채택 후 7일 이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한 다음 날 공식적으로 공고되며,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은 결정이 채택된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됨

7. 연락처

○ 주　　소 : Zhylianska St., 14
Kyiv 01033, Ukraine

○ 전화번호 : +38 044 238 10 80

○ 이메일　 : idep@ccu.gov.ua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ccu.gov.ua

※출처: 세계은행 웹사이트

美 중앙정보국 웹사이트

우크라이나 헌법

베니스위원회 CODICES

(2017. 8. 작성)